15~16세기 중엽 쯔시마를 신속시키기 위한 조선봉건왕조의 활동

리 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입니다.》(《김일성전집》 제75권 337폐지)

15~16세기 조선봉건왕조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경정책과 신축성있는 대외활동을 벌림으로써 왜구들의 침입과 략탈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냈다.

특히 이 시기 조선봉건왕조는 왜구의 소굴로 전락된 쯔시마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제 문화적영향력을 강화하여 이 섬을 신속시키고 그를 통하여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적 극적인 활동을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글에서는 $15\sim16$ 세기 중엽 조선봉건왕조가 쯔시마를 신속시키기 위한 신축성있는 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우선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에 대한 군사적정벌을 통하여 왜구의 침습을 막고 쯔시 마를 정치군사적으로 신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조선봉건왕조가 성립된 후에도 왜구의 침습은 계속되였는데 1392-1419년까지 그침입회수는 무려 126회나 되며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만 해도 70여차례나 있었다. 특히 1419년에 들어와 왜구의 침입이 더 많아지고 포악해졌다.

1419년 5월초 32척의 배를 끌고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굦(충청남도 서천군)에 불의에 침입한 왜적들은 거기에 있던 싸움배 7척을 소각하고 군인들을 살해한 다음 비인현성을 포위공격하다가 조선수군에 의해 격퇴당하였다.*

* 《세종실록》 권4 원년 5월 신해

비인현침입사건이 발생하자 조선봉건왕조는 왜구의 침입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적들의 소굴인 쯔시마에 대한 정벌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원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을 세웠다.

봉건정부는 쯔시마를 최대한 고립시키고 원정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항한 왜 인들과 조선에 무역을 위해 와있는 왜인들을 체포하여 경상, 충청, 강원 3도의 내륙지대에 분산억류하였는데 그 수는 경상도에 355명, 충청도에 203명, 강원도에 33명 도합 591명이였다.*

* 《세종실록》 권4 원년 6월 정축

봉건정부는 한편으로는 쓰시마도주에게 왜구들의 죄행을 단죄하는 편지를 보내여 쓰 시마가 투항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419년 5월 14일 쯔시마원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봉건정부는 곧 리종무를 3군도

체찰사 겸 중군도절제사로, 류습을 좌군도절제사로, 리지실을 우군도절제사로 각각 임명하고 1만 7 285명의 군사와 227척의 함선으로 된 원정군을 편성하였다.

원정군은 6월 19일 3군도체찰사 리종무의 지휘밑에 거제도를 떠나 20일 정오에 쯔시마의 두지포에 도착하였다. 섬에 상륙한 원정군은 연안에 정박하고있는 적선 129척을 로획하여 그가운데서 쓸만 한 배 20척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불래워버리였으며 촌락들을 기습하여 근 1940호의 집들을 소각하였다. 6월 26일 원정군은 3군으로 나누어진을 치고 산을 차지하고있던 적들에게 타격을 안기였다.

궁지에 빠진 쯔시마도주 도도웅와(소우 사다모리)는 강화를 요청하는 투항편지를 보 내왔다.

쓰시마에 대한 대규모의 원정은 왜구의 침략과 략탈을 저지시키고 쓰시마를 신속시 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쓰시마원정후 24년간 왜구의 침입은 29회로서 원정이전 28년간 126회에 달하였던 왜구의 침입회수와 놓고볼 때 이 원정이 왜구의 침입을 저지시키고 쓰시마를 신속시키는 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에 대한 원정을 단행한 이후에도 쯔시마를 신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봉건정부는 쯔시마에 대한 재원정을 계획하면서 쯔시마도주에게 섬을 바치고 완전투 항할것을 요구하였다.

1419년 7월 조선봉건왕조는 3군 9개 부대, 120척으로 편성된 원정군의 주력군을 쯔시마에 출동시키며 3군 75척으로 구성된 다른 련합부대는 등산, 굴두 등지에 매복하고있다가 소굴로 돌아가는 왜구를 요격하여 격멸한 다음 쯔시마원정에 참가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재원정계획은 원정군이 타격하기로 한 왜구가 그해 9월 명나라군대에 의해크게 격파되였고 쯔시마도주가 조선봉건왕조에 항복서를 바친것과 관련하여 취소되였다.

1419년 7월 조선봉건왕조는 병조판서 조말생을 시켜 쯔시마도주에게 보낸 최후통첩장에서 《…대마도(쯔시마)라는 섬은 경상도 계림고을에 소속되여있던것으로서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라는것이 문헌에 뚜렷이 기록되여 고증할수 있다. 단지 그 땅이 몹시 작은데다가 바다가운데 있기때문에 교통이 막혀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쫓겨나서 갈데 없는 왜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소굴로 삼아버렸다.》고 하면서 투항하면후하게 대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치겠다는 강경한 립장을 밝히였다.*

* 《세종실록》 권4 1년 7월 경신

이에 겁을 먹은 쯔시마도주는 1419년 9월 사신을 보내여 항복한다는것과 도장을 수여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해왔으며 1420년 1월에는 조선의 주, 군의 례에 따라 쯔시마에 주이름과 도장을 주면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여왔다. 이에 조선봉건왕조의 례조판서는 쯔시마를 경상도에 소속시키니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이 도의 관찰사에게 하고 례조에 직접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였다.

물론 쯔시마도주의 편지내용은 그의 본심이 아니였지만 이것은 쯔시마가 조선에 신속되였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이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일본막부의 간섭과 쯔시마도주의 교활한 책동, 조선봉건왕조의 나

약성과 우유부단성으로 끝까지 실현될수 없었다.

다음으로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에 대한 경제문화적영향력을 강화하여 쯔시마의 신 속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신축성있는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봉건정부는 원정후 왜구의 재침을 미연에 막고 남방의 정세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쯔 시마에 대한 강경정책과 함께 경제분야에서 일련의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쓰시마는 척박한 자연지리적환경으로 하여 섬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불리하였다. 따라서 쓰시마왜인들은 자기들의 생활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봉건왕조에 의존하여 조선남해안에서 무역과 물고기잡이활동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왜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그들의 신속관계를 고려하여 조선남 해안에서의 3포무역과 연해어로를 승인해주었다.

1426년 1월 조선봉건왕조는 경상도의 냉이포(제포-경상남도 진해시), 부산포, 염포(울산시)에서 왜인들의 무역과 3포연안에서의 어로활동을 승인해주었다.*

* 《세종실록》 권31 8년 정월 무술, 계축

한편 봉건정부는 도주를 비롯한 쯔시마의 봉건세력들을 회유하고 신속시켜 왜구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해마다 많은 량의 쌀과 콩을 주는 특별우대를 하였다. 조선봉건왕조가 쯔시마도주에게 쌀과 콩을 주기 시작한것은 1401년부터였는데 이해 10월 쯔시마도주 소우 사다모찌에게 다른 례물과 함께 쌀과 콩을 각각 20섬씩 주었다.*

* 《태종실록》 권2 원년 10월 병진

1419년 쯔시마원정후 쯔시마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도주에게 해마다 쌀과 콩을 각각 100섬 또는 150섬씩 주군 하였으며 1512년 임신약조에 의하여 절반으로 줄이기 전까지는 대체로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고착시켰다.

쓰시마도주에 대한 조선봉건왕조의 이러한 특별우대는 그에 대한 물질적자극으로 쯔 시마를 더욱 신속시키려는 목적에서 취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와의 무역을 통해 쯔시마에 대한 경제적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진상무역과 공무역, 사무역 등 여러가지 형태로 쯔시마와 무역을 진행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도주가 보내는 례물에 대한 인사차림으로 후한 답례물을 보내 였는데 그것은 무역을 통해 얻는 경제적리익보다도 그들을 회유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였다.

조선봉건왕조와 쯔시마의 경제교류는 16세기에 들어와 쯔시마왜인들이 일으킨 3차례의 왜변들에 대한 봉건정부의 징벌조치로 하여 15세기에 비해 그 규모와 종류가 작아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쯔시마에 대한 경제적영향력은 여전히 계속되였으며 쯔시마를 신속시키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에 많은 문화적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와 일본에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를 보급하는데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의학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쯔시마의 봉건세력들은 조선으로부터 불교경전과 범종, 불교의식용기물 등을 얻어갔

으며 쯔시마에 큰 사원을 건설할 때에는 재정적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449년 조선봉건왕조는 대장경을 보내달라는 쯔시마도주의 요청에 응하여 대장경 1부를 보내였으며 1484년에는 국분사를 위해 세견선의 수효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자 배 2척을 승인하고 인장까지 보내주었다.

또한 조선봉건왕조는 1417년 1월과 1560년 6월 쯔시마봉건령주들의 요청에 따라 4서3경과 같은 유교경전들을 보내주었다.

조선봉건왕조는 1418년 3월 쯔시마도주 소우 사다모찌가 풍병으로 거의 죽게 되자 그에게 청심환, 소합환, 보명단, 양비환, 정기산을 비롯한 약들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에 대한 경제문화적영향력을 통해 쯔시마를 신속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다음으로 조선봉건왕조는 여러차례의 약조를 통해 쯔시마의 신속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신축성있는 활동을 벌리였다

1419년 쯔시마원정후 조선봉건왕조의 포섭정책에 의하여 쯔시마는 물론 일본의 여러 봉건세력들이 앞을 다투어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폐단을 낳았다.

1439년 한해만 보아도 입국왜인이 1만명이나 되고 그들에 대한 공급미는 10만석이나 되였다*고 한다.

*《세종실록》권87 21년 10월 병신

그리하여 조선봉건왕조는 왜인들의 무질서한 방문을 제한하기 위하여 1443년에 쯔시마도주와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이 약조를 통하여 봉건정부는 쯔시마도주가 파견할수 있는 무역선수를 한해에 50척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국왕과 큰 봉건세력을 제외한 중소봉건세력들은 쯔시마도주가 발급한 《도서》(증명서)가 있어야만 조선에 올수 있게 하였으며 쯔시마도주가 조선에 소속된 봉건령주로서 일본의 중소봉건세력들의 무역거래를 제한통제하는 임무를 리행하는 대가로 매해 그에게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을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가 계해약조를 통해 쯔시마에 대한 신속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렸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봉건왕조는 원정후 급격히 늘어난 삼포거류왜인들의 수를 극력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쓰시마원정후 봉건정부는 쓰시마왜인들에 대한 회유와 포섭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3 포에서의 무역과 물고기잡이를 승인하였는데 이때부터 3포에 거류하고있는 왜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3포에 거류하고있는 왜인들은 제정된 계선을 벗어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렴탐도 하고 류언비어도 퍼뜨리였으며 남의 어장을 타고앉아 물고기를 잡고 인원들을 랍치 및 살해하였으며 어선과 조운선을 략탈하는 등 온갖 못된짓을 다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3포거류왜인들의 비행을 막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거류왜인들을 쯔시마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거류왜인의 수는 날이 감에 따라 계속 늘어만 갔다.

조선봉건왕조는 1436년 3월 제포에서 253명, 염포에서 96명, 부산포에서 29명 도합 378명을 축출하고 쯔시마도주가 요청한 60명과 거류를 간청하는 206명을 합하여 266명

만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무역활동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왜인들과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던 쯔시마도주의 묵인 그리고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의 나약성으로 하여 거류왜인축출사업은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3포거류왜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되여 1484년에 이르러 3 058명으로 늘어났다.

조선봉건왕조는 16세기에 이르러 왜인들의 횡포성이 더욱 악랄해지자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강경한 자세로 나갔다.

실례로 쯔시마도주는 1502년 1월에 무명 1 000필을, 그 이듬해 4월에는 흰 모시 1 000필을, 1504년 5월에는 범가죽 1 000장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그 요구가 승인되지 못할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발을 걸기 위한 술책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1503년 4월 쯔시마도주가 1 000필의 흰 모시를 요청해온데 대하여 불과 30필만을, 1506년 11월 명주 3 000필을 요청해온데 대하여 200필만을 주었으며 1504년 5월 쯔시마특송선이 범가죽 1 000장을 요청해온데 대하여 무명 80필만을 주는것으로 그치였다.

또한 조선봉건왕조는 왜인들의 살인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자를 즉시 체포처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1509년 3월 쯔시마도주 특송선 상관 사다나가와 부관 이라 등의 수직(벼슬수여)요청을 거절하고 50년전에 《도서》를 받은 왜인의 방문은 접수할수 없다는것을 쯔시마도주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먼곳에서 살면서 이미 오래전에 《도서》를 받은 자에게는 무역통행증을 발급하지 말데 대하여 쯔시마도주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쯔시마도주를 비롯한 왜인들은 조선봉건왕조의 강경한 요구에 도발적인 침략 으로 대답해나섰다.

조선봉건왕조의 제한통제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오던 3포거류왜인들은 1510년 4월 4일 쯔시마왜구들과 련합하여 3포지역에로 쳐들어왔다. 왜구의 우두머리는 우리 나라에 와서 벼슬을 받으려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다나가였다. 적들은 1 000 여척의 배를 타고 4 000~5 000명의 군대로 락동강하구로 기여들어와 3개 부대로 침공해왔다. 봉건정부는 곧 5 000명의 방어군을 편성하고 웅천, 부산, 동래, 영등포 등지에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15일만에 적들을 격퇴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3포거류왜인들을 쯔시마로 쫓아보내고 종래의 통교 및 무역관계를 단절하였다. 결과 쯔시마는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막부에 중재를 요청해나서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512년 8월 조선봉건왕조는 일본이 왜적두목들의 목을 베여 바친것을 고려하여 화 친관계를 회복하기로 하고 쯔시마에 왜인접대절목(규정)을 접수시키는 형식으로 임신약 조를 체결하였다.

개정한 약조의 내용은 왜인들의 3포거주는 허락하지 않으며 쯔시마도주가 매년 파견 할수 있는 무역선은 종래의 절반인 25척으로 줄이며 도주에게 해마다 주던 200섬의 쌀과 콩도 100섬으로 줄인다는것, 특송선은 없애고 쯔시마도주가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세견선을 통하여 하며 도주의 아들, 대관(도주 대리인), 수직인(조선으로부터 벼슬을 받은자), 수도서인(조선으로부터 도장을 받은자)들에게 해마다 주던 쌀과 콩 그리고 그들이 파견

하는 세견선(무역선)은 일체 폐지한다는것, 도주가 파견하지 않은 배가 가덕도근처에 정 박하는것을 도적배로 취급한다는것, 먼곳의 왜로서 오래전에 도서와 벼슬을 받은자들에게 는 그 대상을 줄이고 도서를 재발급하며 수도방문왜인들은 국왕의 사신을 제외하고 칼을 차지 못한다고 되여있었다.*

* 《중종실록》 권16 7년 8월 신유, 임술

임신약조의 체결은 쯔시마도주를 비롯한 섬의 봉건세력들의 무역규모를 대폭 제한함 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담보하고 쯔시마를 더욱 신속시키는데서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쯔시마도주를 비롯한 왜인들은 계해약조의 복구를 위해 검질기게 시도해오던중 1544년에 또다시 도발적인 사건을 일으키였다.

1544년 4월 조선봉건왕조의 무역제한조치에 불만을 품고있던 쯔시마왜인들은 막부의 비호밑에 20여척의 배로 경상도 사량진을 포위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만호 류택의 지휘밑에 애국적인 군인들은 용감히 싸워 적을 물리쳤다.

이 사량왜변을 계기로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사신을 접수하지 않기로 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강경한 자세앞에 쯔시마왜인들은 또다시 굴복하여 1546년 5월 사량왜변에 참가하였던 왜적 11명의 목을 베여가지고 찾아오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쯔시마왜인들의 사죄와 막부사신의 간청을 고려하여 1547년 2월 강화를 승인하고 왜인들의 무역을 보다 제한통제하는 새 약조를 선포하였다. 이 약조를 정미약조라고 하는데 약조에서는 쯔시마도주의 세견선을 25척으로 하되 그중 큰 배는 9척, 중소선은 각각 8척으로 한다는것, 배의 정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포구체류기간의 식량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며 수도서인, 수직인의 배도 같다는것, 배의 비품은 일체 공급하지않으며 가덕도서쪽으로 와서 정박하는것은 적선으로 취급한다는것, 50년전의 수도서인, 수직인은 접대하지 않는다는것, 마을과 산, 여러 섬으로 들어와 제멋대로 다닌자의 배는 영원히 접수하지 않는다는것, 약조를 어긴자로서 그 죄가 중한것은 3년, 경한것은 2년간무역선을 접수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 약조는 임신약조에 비하여 무역하려 오는 왜인들을 보다 제한하고 약조위반에 대한 징벌규칙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쯔시마와의 관계를 통한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쯔시마왜인들의 도발행위를 보다 강하게 통제하여 그를 더욱 신속시킬수 있게 하였다.

16세기 여러차례에 걸친 왜인들의 침략을 분쇄하고 임신약조, 정미약조를 체결한것은 쯔시마를 조선봉건왕조에 여전히 신속시키고 왜구들의 침입을 종식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쯔시마에 대한 조선봉건왕조의 활동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의 나약성과 우유부단성으로 하여 쯔시마를 완전히 신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못한 제한성도 나타났다.

이처럼 15~16세기 중엽 조선봉건왕조는 언제나 큰 나라의 위치에 서서 쯔시마를 신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림으로써 고려이래로 계속되여오던 왜구의 침입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